

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환급특례 규정

국세청

□ 과세요건

과세대상	세율(kg당)			납세의무자	신고납부
	기본	혼합	가정용		
부탄	114			·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·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·첨가·혼합하는 자	· 반출실적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* 법정서식에 의함
프로판	40	114	40		

* 2002. 1. 1 현재의 세율

□ 환급특례

- 환급신청자(법 §20조의 2 ①)
 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(법§1 ① 4호 바목 물품판매)
 - 가정용부탄을 제조 및 또는 수입하는 자(법§3 납세의무자)
- 판매대상사업자(법§20조의 2 ①)
 -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(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§ 2, 2호 및 4호)

- 고압가스제조자(고압가스안전관리법§4)

○ 대상유종 및 용도(법§20조의 2 ②)

- 취사내장형 가정용부탄으로서
 - 용기난방용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(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령 및 산자부장관 고시기준에 적합)
 -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(고압가스안전관리법 §5 및 산자부령의 정함)

○ 환급세액

-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(법§1 ② 4 호 바목의 세액-동호 마목의 세액)

□ 공제 또는 환급절차

-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제출

<첨부서류>

- 가정용 부탄 판매명세서
- 매입·매출세금계산서 사본
- 국세청장(관세청장)이 정하는 서류

□ 부정환급 신청자에 대한 조치

1. 세액추징

- 특소세 환급·공제를 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
 - ①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

의해 환급신청서 제출

- ②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신청서 제출
- ③ 동일한 재화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환급신청서 제출
- ④ 부가가치세법의 의하여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 제출
- ⑤ 가정용부탄을 판매대상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
- ⑥ 가정용부탄을 대상유종 및 용도이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

○ 가산액 부과

- 부당 환급신청세액의 1일당 1만분의 5
 - ※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 추징 가능

2. 관허사업제한

-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(법§20의 2 ④)
 - ①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특별소비세를 추징당한 경우
 - ②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
 - ※ 세무서장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관서는 이에 응하여 함

□ 시행시기

- 2002. 1. 1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시행

가정용부탄 판매분 환급신청 사례

사례 1

- “갑” 부탄가스제조자(겸업충전소사업자)가 '02. 1월중에 부탄 10,000kg과 프로판 5,000kg을 정식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혼합한 다음 수송용으로 '02. 1월중에 부탄 8,000kg, 프로판 4,000kg을 판매하였을 경우

- 특별소비세 납부세액 계산

$$(부탄 8,000kg + 프로판 4,000kg) \times 114원 - (부탄 8,000kg \times 114원) - (프로판 4,000kg \times 40원) = 296,000원$$

(교육세 44,000원)

- ※ ① “갑” 겸업충전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에 해당
- ② '02. 2월말까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세액납부
- ③ 납부할 세액은 296,000원(교육세 44,400원)
- ④ 재고분 부탄 2,000kg과 프로판 1,000kg은 수송용으로 판매한 달의 다음달 신고납부
- ⑤ 부탄에 대한 교육세는 특소세의 15%, 프로판은 교육세 없음

사례 2

- “을” 겸업충전소(일반충전소)가 '02. 1월중에 부탄 10,000kg을 정식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프로판과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가스소매사업자들에게 '02. 1월중에 9,000kg을 정식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을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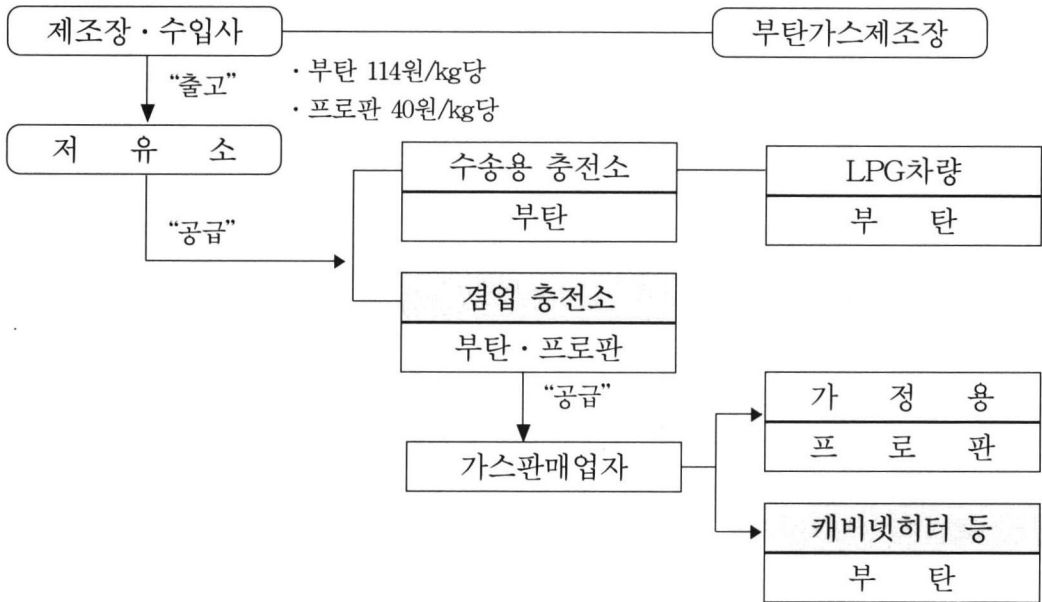
- 특별소비세 납부세액 계산

$$부탄 9,000kg \times (114원 - 40원) = 666,000원(교육세 99,900원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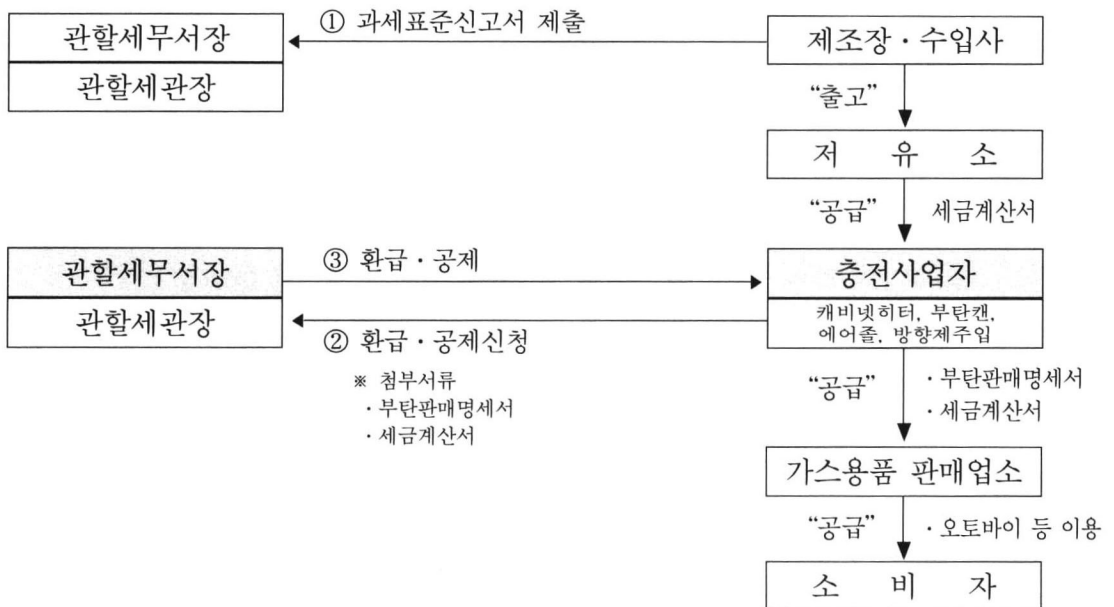
- ※ ① '02. 2월말까지 특소세 환급신청서 제출
 -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, 매출·매입세금계산서
 - 특소세 부과(납부)사실 증명서
- ② 특소세 환급할 세액은 666,000원(교육세 99,900원)
- ③ 재고분 부탄 1,000kg은 가정용으로 판매한 달의 다음달 환급신청 가능
- ④ 부탄에 대한 교육세는 특소세의 15%, 프로판은 교육세 없음

<유통구조 및 환급절차 도해>

□ 유통구조



□ 환급절차



부탄 판매부과금 관련

산업자원부

1. 부탄 판매부과금 징수개요

- 징수근거 : 석유사업법 제18조제1항
- 징수목적 :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/특소세 목적과 동일(휘발유와 LPG간 가격격차 완화)
- 징수대상 :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
- 징수시기 : 매월 판매량을 다음달말까지 신고/납부
- 최초부과 : 2001. 7월(특소세와 동일시점)
- 징수단가 : 19원/kg(2002. 7월부터 26원/kg으로 인상)
- 징수규모 : 연간 826억원(부탄물량 432만톤 기준)
- 재원용도 : 장애인에 대한 부탄 특소세 인상분 보전

2. 부탄 판매부과금 징수면제

- 징수면제대상
: 부탄 특소세 환급대상으로 사용되는 부탄(캐비넷히터, 부탄캔, 에어졸용) 물량 중 2002. 1. 1이후 판매분
- 징수면제 근거 : 석유사업법 관련고시 개정(2001. 12. 31)
- 징수면제 절차

<캐비넷히터>

- 수입정유사가 부과금 포함가격으로 충전소에 공급
- 충전소는 부과금 불포함 가격으로 판매점에 공급

- 충전소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정유사에 환불요구
- 수입정유사는 충전소에 부과금을 환불하고, 익월 부과금 납부신고시 동 물량만큼을 공제

<부탄캔 및 에어졸>

- 수입사가 부과금 포함가격으로 캔 제조업체에 공급
- 캔 제조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정유사에 부과금 환불요구
- 수입정유사는 제조업체에 부과금을 환불하고, 익월 부과금 납부신고시 동 물량만큼을 공제

3. 원가인하요인(특소세/부과금/도입가):126.5원/kg

- 특소세 74원, 교육세 11.1원, 부탄부과금 19원, 부과세 10.4원, 수입정유사 가격인하(1월)12원
※ 13kg 용기당 1,644원 인하요인 발생(추정)

4. 고려사항

- 가격인하요인 미반영 → 도시가스, 전기난로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/소비자 불만 → 시장상실
- 향후 LPG정책 수립·시행의 타당성 훼손
 - 프로판 특소세 폐지주장의 명분도 희박
 - 각종 정부 지원시책 수립에 한계
 - ※ 부탄 부과금 면제정책 수립과정
- 가격자유화이후 수수료 인상문제